

2023년 신입직원 6급(고졸) 공채 FAQ

I 채용공고관련

□ 채용인원은 몇 명인가요?

⇒ 이번 신입직원 공채는 6급공채의 경우 23명을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합니다. 또한, 보훈·장애인 구분 채용 등을 진행하니 지원시 참고해주시고, 세부 모집분야별 인원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훈 전형과 장애인 전형의 지원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보훈 전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전형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장애인이라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자격별 제출서류는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이후 신분과 보수수준이 어떻게 되나요?

⇒ 이번 신입직원 공채는 채용형 인턴으로 채용합니다. 약 4개월 인턴신분동안은 법적으로는 '기간제근로자'입니다. 인턴기간동안 월보수는 세전 총액 225만원이며, 정규직 전환 후 보수수준은 '공공기관 알리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형 인턴으로 선발하면 정규직 전환은 언제 하나요?

⇒ 교육기간 및 실무 인턴기간(약 4개월) 종료 후 교육 및 인턴과제 평가 결과 등에 따라 기준 미흡자를 제외하고 정규직 전환 예정입니다. 세부 전환기준 및 일정은 별도 전환계획에 따르며, 채용형 인턴 합격자에게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내 근무재기간제포함여도 지원가능한가요?

⇒ 네, 지원 가능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 모두에게 기회는 열려 있습니다. 다만, 결격사유([붙임 1])에 해당되거나, 모집분야 또는 5급 중복지원시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6급(고졸)공채와 5급공채에 중복지원할 수 있나요?

⇒ 중복지원할 수 없으며, 중복지원이 확인됐을 경우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중복지원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 '모집분야' 가 무슨 의미 인가요?

⇒ '모집분야'란 채용공고문 '1.모집분야 및 선발인원'에 인원이 표기된 각각의 모집단위를 의미합니다. "행정", "건축군"등이 각각의 모집분야입니다.

구분	NCS기반 직무설명서		일반채용	사회형평채용	
				보훈전형	장애인전형
채용형 인턴 (정규직 전환시 일반직 6급)	사무직	행정	6	2	2
		토목			
	기술직	조경	5	2	2
		건축			
		기계			
		전기			

□ 모집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이 정해져 있나요?

⇒ 네, 모집분야별로 채용예정인원이 정해져 있으며, 보훈·장애인 전형 등은 별도 구분하여 채용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학력이 고졸이라면 인문계 고등학교 출신도 지원 가능한가요?**

⇒ 이번 6급(고졸)공채에서는 최종학력이 고졸 기준에만 부합한다면 인문계, 특성화고, 특목고 등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에 해당하는 고등학교를 졸업하였거나 '24. 2월까지 졸업예정인 사람 이면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교육부 인가 대안고등학교 졸업자의 경우도 지원이 가능 하지만 미인가 대안고등학교의 경우는 학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6급(고졸)공채에 지원 가능한 고졸자의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습니다.**

⇒ 고교졸업 예정자('24.2 졸업예정)이거나 최종학력이 고졸인 자로 검정고시 합격자나 대학중퇴자, 대학 재학 및 휴학자도 지원가능합니다. 다만, 공고일 기준 대학교(전문대학 포함) 졸업자 및 졸업학년 2학기 이상 재학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아래 예시에 따라 지원 가능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 예) 1. 최종학력이 중학교인 자 → 지원불가
- 2. 최종학력이 고졸에 준하는 검정고시 합격자 → 지원가능
- 3.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중인자 중 1학년부터 졸업학년 1학기 재학 또는 졸업학년 1학기 휴학, 중퇴, 제적자 → 지원가능
- 4. 대학(전문대포함) 졸업학년 1학기를 마치고 휴학한 자 → 지원가능
- 5. **공고일 기준 대학(전문대포함) 졸업학년 2학기 재학중인 자 → 지원불가(대졸자로 간주)**
- 6. **졸업유예, 졸업유보자 → 지원불가(대졸자로 간주)**
- 7. **사회봉사학점, 어학성적 등 별도 수업 외 졸업자격 미달로 인한 대학(전문대포함)미졸업자 → 지원불가(대졸자로 간주)**

□ **대학 재학 중 6급 공채에 합격한 경우, 학업을 중도 포기해야 하나요?**

⇒ 업무시간 중 학교에 다니는 것은 불가능하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유연근무제 활용을 통한 학업의 지속은 가능합니다.

□ **연령, 학력, 내신등급 제한이 없는 것이 확실한가요?**

⇒ 연령, 내신등급에 제한없이 입사지원하실 수 있으나 학력은 6급(고졸) 공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대졸이상(공고일 기준 졸업년도 2학기 재학이상 포함)의 학력을 소지한 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군 미필자, 군 복무중인 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6급(고졸)공채의 경우, 병역을 기피하지만 않았다면 병역미필자의 경우도 지원 가능합니다. 군 복무중인 경우 인턴 근무시작 시점을 고려하여 '23.10.22.까지 전역예정자로서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소집에 응할 수 있어야 지원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입사 이후 군 입대를 하는 경우 휴직이 가능합니다.

□ **NCS기반 직무설명서에 명시된 직무와 관련한 교육, 경력, 경험 등이 많이 부족한데 지원자격 미달인가요?**

⇒ 직무설명서에 기술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직업기초능력과 기본적인 직무수행역량을 전형절차에서 검증하며 교육, 경력, 경험의 유무가 지원을 제한하는 요소는 아닙니다.

□ **채용목표제란 무엇인가요? 자세한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공사는 사회형평적 채용을 위해 본사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지역인재, 양성평등 채용에 대해 아래와 같이 채용목표 비율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세부 적용방법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용목표비율

구 분	이전지역인재	비수도권 지역인재	양성평등
채용목표비율	30%	35%	30%

□ **이전지역지역인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본사 이전지역(경상남도 및 울산광역시) 소재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졸업(예정)자. 단,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됩니다.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르며,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학력사항을 기입하지 않고 이전지역인재 해당 여부만을 표시하게 되며, 오류·허위 입력으로 판명될 경우 입사취소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붙임 5]**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비수도권 지역인재는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중인 자를 말합니다. 상세 내용은 공고문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내 청년인턴으로 근무하여 탁월·우수·성실 인턴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일반공채에 지원하려 하는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있나요?**

⇒ 탁월·우수·성실 청년인턴에 대하여는 서류전형에 우대사항이 적용될 수 있으며, LH에서 해당여부를 별도로 확인하기 때문에 증빙서류를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세부기준에 대하여는 **[붙임 2]**의 요건을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다만, 탁월·우수·성실인턴이 아님에도 허위로 지원할 경우 불합격 처리 될 수 있으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산점(우대사항) 적용기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 가산점(우대사항)에 대하여는 **[붙임 2]**에 자세하게 나와있으니 참고바랍니다.

□ **한국사 능력검정시험, 기능사, 산업기사, 컴퓨터 활용능력관련 자격증 등은 가점으로 인정이 안되나요?**

⇒ 네, **[붙임 2]**에 명시된 자격증 외에 기타 자격증은 가점 자격증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가산점 대상 항목이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 가산점은 특별우대, 일반우대(자격증, 수상경력), 청년인턴 분야별로 가장 유리한 1개에 대해서만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예를 들어, 취업지원대상자와 이전지역인재가 동시에 해당되더라도 유리한 1가지만 적용됩니다. 자세한 가산점 목록 및 적용방법에 대해서는 **[붙임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사지원시 제출하는 서류는 어떤 것이 있나요?**

⇒ 입사지원 단계에서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요구하지 않으며,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해서 관련 증빙을 받을 예정입니다.

(제출서류 목록은 채용공고문을 참고)

만일 입사지원서 상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합격취소 처리합니다. 입사지원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전형에서 통과할 경우 타인의 응시 기회를 박탈하는 행위임을 인지하시고 허위기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향후 공사에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자격증이나 제출서류는 꼭 원본으로 제출해야 하나요?**

⇒ 아닙니다. 온라인을 통해 스캔본, 사본 등 서류 제출해주시면 되고, 원본이 필요한 경우 대상자에게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전형별 합격자는 개별통지해 주시나요?**

⇒ 전형별 합격자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응시자가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응시자에게 개별적으로 합격/불합격을 안내하지 않습니다.

II 전형절차 관련

□ LH의 NCS기반 채용 적용 수준을 알고 싶습니다.

⇒ 공사는 아래와 같이 NCS기반 채용을 적용합니다.

구 분	적용수준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	○ 모집분야별 NCS기반 직무설명서 공지 ○ 직무요건을 반영한 입사지원서
서류전형	○ 불필요한 스펙 평가 배제
필기전형	○ 직무능력검사 (NCS 직업기초능력 + 직무역량)
면접전형	○ 직업기초 및 직무수행능력 검증을 위한 구조화 면접

□ 서류전형 평가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 서류전형은 자기소개서 평가점수, 가산점을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 순으로 모집분야별 40배수 내외를 선발합니다. 단, 가산점을 제외하고 40점 이상 득점자에 한해 합격처리하며, 이 기준은 서류전형이 면제되는 자격증, LH탁월인턴 등 서류면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세부기준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절차별 모집배수는 어떻게 되나요?

⇒ 서류전형은 40배수내외로 적용 예정입니다. 필기전형에서는 2배수 내외로 선발하여 면접전형에 응시기회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다만, 장애인전형 지원자는 필기전형 합격자 선발시 일반·보훈전형의 2배로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선발인원	구분	2명이하	3~4명	5명이상
합격자 선정배수	일반/보훈전형	4배수	2.5배수(반올림)	2배수
	장애인전형	8배수	5배수	4배수

□ 부주의로 자기소개서에 직·간접적으로 학교명을 기재하게 되었습니다. 감점처리 되나요?

⇒ 본인을 특정하기 위한 정보, 학교명, 직장명 등을 기재할 경우 평가기준에 따라 처리할 예정입니다. 자기소개서 작성시 **[붙임 4]**의 구체적인 감점 및 탈락기준을 참고하여 평가에 불이익이 없도록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필기시험이 서울, 전주에서 실시되는데 시험장소는 어떻게 결정 되나요?

⇒ 필기시험 장소는 입사지원 시 선택하게 됩니다. 다만 시험장소별 수용 인원 한도가 있어 경쟁이 발생할 경우 입사지원서 선(先) 제출자에게 우선권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일부 지원자의 경우 본인의 신청지역과 다른 시험장소에서 필기시험을 치러야 할 수도 있습니다.

□ 직무능력검사에 전공과목은 반영이 안되는 건가요?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공사 직무수행에 필요한 기본역량을 검증하는 시험입니다. 직무수행역량을 검증하는 만큼 직무관련 요소가 시험문항에 반영될 수 있으며, 이것이 전공적 요소를 배제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특정 직무에 유불리한 문제가 출제되지는 않습니다.

□ NCS 직업기초능력평가의 측정(평가영역)은 무엇인가요?

⇒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을 중심으로 출제될 예정이며, 기타영역을 연계한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필기전형 문항수 및 시험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 직무능력검사는 50문항 60분이 소요됩니다.

□ 온라인 인성검사는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나요?

⇒ 응시대상자는 필기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온라인 인성검사 접속링크가 제공됩니다. 온라인 시행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인성검사 결과도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미치나요?

⇒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참고자료로만 활용합니다. 다만, 인성검사는 필수절차로서 정해진 기한내 미응시한 경우 면접전형 등 이후 채용 전형에 응시제한 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AI면접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 공사는 편견없는 공정채용의 실현을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한 면접을 시행합니다. 필기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응시자가 인터넷으로 면접프로그램에 접속하여 시행하게 되며, 시행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할 예정입니다.

□ AI면접 결과는 어떻게 활용되나요?

⇒ AI면접결과는 면접전형에 면접관 참고자료로 제공됩니다. AI면접 결과만으로 당락을 결정하지 않으며 응시자별 질문 시 참고할 수준으로 제공됩니다. AI면접 또한 인성검사와 동일하게 필수 절차로서 미 응시에 대한 불이익이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면접은 어떤 방식인가요?

⇒ 직무능력과 인성, 공사 인재상 부합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종합 심층면접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1인당 예상 면접 소요시간은 약 25분이며 구체적 시간은 변동 가능합니다.

□ 직무면접이 작년과 다른 것 같은데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작년까지 진행했던 키워드 면접과 달리 올해는 직무관련 자료를 제공하고 그 자료를 바탕으로 자료를 만들어 발표하는 면접으로 진행됩니다. 면접전형 대상자 안내시 세부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면접일정 및 장소는 어떻게 되나요?

⇒ 면접일정 및 장소는 필기전형 합격자발표 이후 면접전형 대상자 안내시 세부내용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채용전형별 점수가 다음 전형에 반영되나요?

⇒ 서류전형 점수는 다음 전형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필기전형 및 면접전형은 최종 합격자 결정에 반영됩니다. 필기전형과 면접전형의 비율별 점수를 합산한 총점의 고득점자를 선발하며, 최종 합격자 선발시 합산 점수가 동점인 경우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법 등) > 면접전형(가산점 제외) > 필기전형 점수(가산점 제외) 순으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필기전형 점수까지 모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전원 선발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III 기타사항

□ 온라인 면접은 어떤 경우에 진행하나요?

⇒ 코로나19 관련 위기단계 하향으로 확진자도 대면면접을 진행하고, 온라인 면접은 특수한 상황 등으로 인해 필요시에만 진행될 예정입니다. 온라인 면접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홈페이지 등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온라인 면접은 어떻게 진행되는 건가요?

⇒ 응시자는 사전 안내된 방법으로 온라인 면접 프로그램에 개별 접속하여 비대면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됩니다.(세부 진행 방법은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 전후 별도 안내 예정)

□ 온라인 면접시에는 서류를 어떻게 제출하나요?

⇒ 필기전형 합격자 발표일 이후 정해진 기한 내에 제출서류 스캔본을 온라인 등록(최종합격자는 입사시 원본 제출)하여야 합니다. 온라인 면접시에는 본인확인 등을 위해 최근 3개월 이내 사진을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기한내 미제출시 입사의사 없음으로 간주하여 입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예비합격자를 선발하나요?

⇒ 네. 공사는 합격 후 임용포기 등에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선정·운영합니다. 예비합격자는 모집분야별 탈락자중 고득점자 순으로 최종 합격예정인원의 50%내외(소수점 반올림하되 모집분야별 1명 이상 배정, 과락 제외)를 선발합니다. 다만, 장애인전형 지원자는 예비합격자 선발시 일반·보훈전형의 2배로 선발하며 자세한 내용은 아래표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합격자	일반/보훈채용	장애인채용	비고
	50%(소수점 반올림)	100%	최소 1인 선발

□ 예비합격자 운영기간은 어떻게되나요?

⇒ 채용형인턴 임용일로부터 신입사원 교육(1개월 예정) 종료시까지(교육종료일 18시)유효합니다.(예를 들어 임용일이 '23.10.23.', 교육 종료일이 '23.11.10.인 경우 '23.11.10. 18시까지 결원 확인되어야 임용가능)

□ 전형별 득점점수는 공개하나요?

⇒ 필기전형 점수와 지원분야 커트라인은 합격자 발표 시 공개할 예정이며, 면접전형 점수는 공개하지 않습니다. 다만, 최종전형 불합격자 중 희망자를 대상으로 역량진단 보고서, AI면접 결과지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역량진단 보고서는 무엇인가요?

⇒ 역량진단 보고서는 최종탈락자를 대상으로 향후 취업역량 강화를 위해 합격자 대비 필기 및 면접 점수 수준, 면접전형 세부 평가항목별 득점 수준 등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 채용서류를 반환받고 싶은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 합격자 발표 시에 채용서류 반환에 대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해당안내에 따라서 신청하시면 제출하신 서류를 보내드립니다.

□ 6급(고졸)공채 입사자의 입사 후 승진제도는?

⇒ 정규직 임용 및 근무 6년 후 승진기회를 부여합니다. 다만, 승진관련 내용은 변동사항이 있을 수 있으니 입사 후 별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최종합격하게 되면 어디에서 근무하게 되나요?

⇒ 최종합격자는 경남 진주소재 본사 뿐 아니라 전국의 지역본부, 사업단, 현장에서 근무하게 됩니다. 세부적으로는 합격자의 역량, 희망 근무지역, 공사 인력배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예전에 벌금형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나요?

⇒ 채용결격사유는 개별적으로 판단하며, [붙임 1]에 해당사유가 나와 있으니 참고바랍니다.

붙임1 공사 직원채용 결격사유

□ 인사규정 제9조(채용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따라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따라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삭제
10.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 취소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를 포함한다)
 -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15.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6. 「공공주택특별법」 제9조제2항 또는 제4항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자를 포함)

붙임2 채용 우대사항 및 가산점 부여 자격증 내역

□ 채용 우대사항

구분	대상	해당자	가 산 점 수	비 고
특별 우대 가산점	취업지원 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의 취업지원대상자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퍼센트 또는 10퍼센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해당하는 가점 등 적용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및 중증장애인	서류, 필기, 면접전형 등 각 전형별 만점의 5퍼센트 중증장애인은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를 추가 가산	중증장애인으로 선택한 경우 중증장애인증명서 발급 및 제출 가능해야함
	국민기초 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의 국민기초생활수급대상자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지원자 본인 명의의 수급자 증명서만 인정
	이전지역인재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지역(경남·울산)인재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북한이탈 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의 북한이탈주민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다문화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의 다문화가족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자립준비청년 (보호종료아동)	「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보호조치가 종료되거나 해당 시설에서 퇴소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 따른 '청년에 한해 적용'
일반 우대 가산점	자격증	고급자격(사무), 기술사(기술, 건축사(건축), 환경영향평가사(환경))	서류전형 면제 필기전형 만점의 10퍼센트 면접전형 만점의 5퍼센트	고급자격 : 한국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국제재무분석사(CFA) 3차 합격 ※ 가산점 부여 공모전 - 대학생주택건축대전(건축), 국토개발기술대전(토목) ※ 수상팀당 2인까지 인정 ※ 필기전형 가산점은 작품 제출 50일 이상 시 적용
	수상경력	공모전 1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5퍼센트	
		공모전 2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및 필기전형 만점의 3퍼센트	
		공모전 3등상 수상자 공모전 4등상 수상자	서류전형 면제 서류전형 면제	
어학성적	[상세보기 #3] 해당자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청년 인턴 가산점	청년인턴 경험자	탁월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면제	※ 청년인턴 채용공고에 고지된 가산점 부여 기준 및 유효기간 내 1회에 한함
		우수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5퍼센트	
		성실 청년인턴으로 선발된 자	서류전형 만점의 3퍼센트	

* 특별우대가산점은 본인에 가장 유리한 가산점 1개만 인정하고, 일반우대가산점은 대상별로 각 1개만 인정하며 대상별로는 가산 점수가 적용되는 각 전형단계별로 중복하여 적용

* 특별우대가산점과 일반우대가산점 및 청년인턴 가산점은 각각 인정하여 합산

* 취업지원대상자가 일반지원자와 경쟁하는 경우 관련법에 따라 3인이하 모집분야는 가점 미적용. 다만 응시자의 수가 선발예정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

* 수상경력은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수상한 실적만 인정하며, 우대는 3년 내 1회에 한함

* 수상경력 가산점은 공모 시 가산점 부여조건을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모집분야 해당자에게 가산점을 부여

* 서류전형 면제는 서류전형 최소 합격점수를 충족한 지원자에 한해 적용

* 우대사항 중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가산점은 서류접수 마감일(23.7.26(수))까지 취득한(합격일자 기준) 자격에 한해 인정

□ 채용 우대사항이 적용되는 고급자격증 목록 및 적용기준

모집분야		해당 고급자격증 및 분야
사무직	행정	한국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국제재무분석사(CFA) 3차합격
기술직	토목군	토목 (기술사) 농업토목, 토목구조, 토질 및 기초, 도로 및 공항, 상하수도, 수자원개발, 지질 및 지반, 철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토목시공, 토목품질시험, 항만 및 해안, 해양, 건설안전
		조경 (기술사) 조경, 자연환경관리
	건축군	건축 (기술사)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설안전 (건축사) 건축사
		기계 (기술사) 건축기계설비, 기계,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소방, 소음진동
전기 (기술사)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소방, 전기안전, 정보통신		

* 자격증 가산점은 종류, 개수에 상관없이 가장 높은 가산점 1개만 적용

* 가산점은 서류접수 마감전일(23.7.26(수))까지 취득한(합격일자 기준) 자격에 한해 인정

붙임3 어학성적 가산점 기준

외국어명	어학성적 가산점 기준
영어	TOEIC 700점 이상, TEPS 301점 이상 TOEFL iBT 80점 이상, TEPS-S 50점 이상, TOEIC-S 120점 이상, OPIc IM2 이상
중국어	新HSK 5급 180점 이상 또는 新HSK 6급 180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스페인어	DELE B2 이상, FLEX 700점 이상
독일어	Goethe-Zertifikat B2 이상, FLEX 700점 이상
프랑스어	DELFB2 이상, FLEX 700점 이상
러시아어	FLEX 700점 이상
일본어	JPT 700점 이상, FLEX 700점 이상

* 모든 어학성적은 '21.7.26 이후 응시하고 지원서 접수 마감 전일(23.7.26(수))까지 성적 발표한 국내 정기시험에 한함(다만,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영어/외국어 사전등록한 경우에는 5년 인정)

※ 상기 자격증 등 증빙자료를 면접전형 진행 전 제출함. 다만, 유효기간이 임박한 경우 미리 증빙자료 등을 준비하여야하며, 유효기간 만료 전에 미리 증빙서류 등을 발급받아 면접전후 제출해야함. 증빙서류 미제출 등 유효기간 만료로 진위확인 불가능 시 관련 불이익은 응시자의 귀책임

붙임4

블라인드 위반, 자기소개서 불성실 관련 내용

□ 블라인드 채용 미준수 : 감점 및 탈락처리

① 개인 신상정보 : 기재불가(감점 및 탈락처리)

구분	위반사항	위반 예시
1단계 위반 위반횟수에 따라 감점 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15점	출신 학교	(기준) 출신학교를 언급하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감점 처리 (위반 예시) - 한국 대학교 건축학과를 졸업한 저는 설계에 관한 부분을 ~ - 저는 한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
	출신지	(기준) 출신지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감점 처리 (위반 예시) 부산에서 태어나 부산을 빛낼 수 있는 업무가 하고 싶어 ~
	나이	(기준) 나이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감점 처리 (위반 예시) - 저는 ~ 29세 지원자입니다. - 제가 22세가 되던 해에 평창올림픽이 개최되어 자원봉사를 ~
	성별	(기준) 의무복무에 관한 내용(병장, 카투사, 의경, 병사) 등 특정 성별을 드러내는 단어를 사용하여 성별이 직접적으로 드러나는 경우 감점 처리 (위반 예시) - 카투사로 활동하며 회화 실력이 향상되었으며 ~ - (통신병, 운전병 등(간부가 아닌 병사의 보직))으로 복무하며 ~ - (훈련병, 이병, 일병, 병장)시절 훈련중에 ~ - 언니, 오빠들의 친한 동생이 될 수 있었으며 ~ - 행복주택 사업에 사촌 형이 수혜 대상이 되어 ~
	신체 조건	(기준) 신체조건을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감점 처리 (위반 예시) 185cm가 넘는 큰 키를 이용하여 ~
	종교	(기준) 종교를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감점 처리 (위반 예시) - 교회 청년부로 활동하며, 실수를 연발해 목사님에게 혼나기도 했지만 ~ -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며 마음의 안정을 얻고 ~ - 사찰에 가서 스님들, 보살님들과 함께 신자님들을 돕다보니 ~
2단계 위반 탈락처리	이름	(기준) 인적사항 입력란 외에 심사위원이 볼 수 있는 자기소개서 본문에 자신의 이름을 작성할 경우 탈락 처리 (위반 예시) - 입사 후에도 차질 없이 진행하는 신입사원 홍길동이 되겠습니다. - 아이디어뱅크 홍길동이 되고 싶어 ~ - "친절한 길동씨"라고 불리곤 했습니다.
	가족 및 친인척 재직 정보	(기준) 가족 및 친인척의 LH 및 유관기관 재직정보를 직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작성할 경우 탈락 처리 (위반 예시) - 국토교통부에서 근무하시는 부모님의 영향을 받아 ~ - LH에 재직 중인 이모부의 말씀을 듣고 ~

② 경력 및 경험사항 : 기관명 기재 가능(부서명 및 위치 함께 기재 불가)

구분	기재사항	위반 예시
기재가능	기관명 또는 부서명	(기준) 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 란에 기관명이나 부서명 중 1개 기재 가능 (허용 예시)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체험형 인턴으로 근무를 하면서 ~ - 도로공사에서 토목감독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 - ○○전자 기획실에서 전략수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위반	기관명 + 부서명	(기준) 자기소개서 및 경력·경험 란에 기관명과 부서(지사)명을 함께 기재할 경우 감점 처리 (위반 예시) - 한국토지주택공사 강남권주거복지지사에서 인턴으로 근무 하면서 ~ - 한국전자 기획실에서 전략수립 업무를 담당하였으며 ~
위반횟수에 따라 감점	1회 5점 2회 10점 3회 이상 15점	

* (경력사항) 금전적 보상을 받은 경우(직장근무, 공모전 입상 등)

* (경험사항) 금전적 보상이 없는 경우(학술연구, 시민단체, 봉사단체 등)

□ 자기소개서 작성내용 성실성 위반 : 탈락처리

구분	위반사항	위반 예시
위반시 탈락처리	표절률	(기준) 표절률 검사 결과 전체 표절률 30% 이상 또는 문항별 표절률 50% 이상인 경우 탈락 처리 * 본인이 작성한 내용을 개인 블로그 등 인터넷에 게시할 경우 표절률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음을 유의
	명칭	(기준) 우리 공사를 칭할 때 다른 기관명을 사용하거나 우리 공사의 명칭을 잘못 기재하는 경우(오타 포함) 탈락 처리 (위반 예시)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주택공사", "LH", "lh" 외에는 모두 오타로 간주
	중복	(기준) 자소서 별개 문항에 동일 문항을 중복으로 사용하는 경우 등 동일 문장 반복·문항별 동일 답변 시 탈락 처리
	불성실	(기준) 자소서 글자 수를 채우기 위해 의미 없는 문자·숫자·기호 등을 나열하는 경우 탈락 처리
	기타	(기준) 그 외 질문과 상관없는 답변을 적는 등 지원서를 불성실하게 작성하는 경우 탈락 처리

* 서류전형 면제자(고급자격증 소지자 등)도 자기소개서 불성실 작성에 해당되는 경우 탈락

□ 이전지역인재 상세내역

1. 지역인재 개념

- (정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 기준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소재 학교 졸업(예정)자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대학을 졸업(예정)인 자는 제외
 - 이전지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 대학에 재학(휴학)중인(졸업예정자 제외) 자는 포함

※ 대학 졸업예정자의 범위 : '24.02월까지 졸업예정인 자에 한하여 인정하며, 4년(4년제의 경우 4년=8학기, 5년제의 경우 5년=10학기, 전문대학의 경우 2년=4학기)이상 등록하고, 최종학기 수강신청학점을 포함 해서 졸업학점에 도달된 자로서, 재학 중인 학교의 학칙에 따라 졸업예정자로 인정되어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 졸업예정증명서 발급이 가능해야 하고, 공사에서 요구하는 시점에 제출 할 수 있어야 함.

※ 이전지역 : 본사 이전지역인 경상남도, 울산광역시를 말하며 부산광역시를 제외함.

2. 이전지역 대학의 범위 : 본사 이전지역에 소재한 아래의 학교(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 ①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하며,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등의 본교
 -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이전지역에 소재하는 지역대학은 이전지역 학교에 포함
- ② 「고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본교 및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지방캠퍼스(이원화 캠퍼스)
 - * 본교와 다른 이전지역에 본교 및 이원화 캠퍼스가 위치한 경우,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되며, 이 경우 이전지역에서 대학교를 졸업, 졸업예정인 것으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 이전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이원화 캠퍼스 중 본교가 이전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이원화 캠퍼스도 본교가 위치한 시·도의 지역인재로 포함
- ③ 「울산과학기술원법」에 따른 울산과학기술원,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에 따른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및 「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
- ④ 특별법으로 설치된 다음 학교는 졸업 후 임용이 보장되고 일정기간 복무의무를 지며 국고에서 학비를 부담하므로 소재지에 관계없이 제외
 - ㉗ 「경찰대학 설치법」에 의한 경찰대학(경기)
 - ㉘ 「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해·공군사관학교(서울·경남·충북)
 - ㉙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국군간호사관학교(대전)
 - ㉚ 「육군3사관학교 설치법」에 의한 육군 제3사관학교(경북)
 - ⑤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 ※ 외국학교 및 지방에 있는 외국학교의 본교는 제외

3. 이전지역인재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의 범위(이전지역인재 채용목표제 운영지침에 따름)

- (1) 다음의 이전지역대학 졸업(예정)자
 - ㉗ 이전지역에 위치한 「고등교육법」상의 학교와 과학기술 대학을 졸업한 경우
 - ㉘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경우 이전지역에 위치한 소정의 학교에서 전 기간을 수강하고 졸업한 경우
- (2) 이전 지역인재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아래 학교를 최종적으로 졸업하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 또는 열거된 학력을 보유한 사람은 해당 학력을 제외한 최종 학력이 이전지역 학교일 경우
 - ㉗ 「고등교육법」, 특별법 등 교육관계 법령에 규정된 대학원
 - ㉘ 「고등교육법」에 규정된 사이버대학
 - ㉙ 「평생교육법」에 규정된 평생교육기관
 - ㉚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한 독학학위 취득자
 - ㉛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학위 취득자
- (3) 학교 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 ㉗ 수도권 소재 학교 및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소재 학교가 이전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전 졸업자는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㉘ 지방소재 학교가 수도권으로 이전하였거나 이전지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이전하는 시점 이후 입학자는 수도권 또는 이전지역 밖의 학교를 졸업하거나 졸업예정인 것으로 보아 이전 지역인재에서 제외

< 예 시 >

- <본교의 위치와 본교·지방캠퍼스의 위치가 다른 경우>
 - 본교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본교·지방캠퍼스가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본교·지방캠퍼스는 지역인재에 해당
 - 본교가 지방에 위치하고, 본교·지방캠퍼스가 다른 지방에 위치한 경우 : 본교·지방캠퍼스는 해당 캠퍼스가 위치한 곳의 지역인재에 해당
 - * 부산대 본교는 부산에 위치, 지방캠퍼스인 양산캠퍼스의 경우 경남에 위치하므로, 본교 학생은 부산, 양산캠퍼스 학생은 경남의 지역인재에 해당
- <이전지역 대학교와 타 지역 대학교를 모두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서울 소재 대학 졸업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 졸업(예정) : 해당
- <대학 졸업 후 다른 대학에 재학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해당
 - 타 지역 대학 졸업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수강지역대학을 변경한 경우>
 - 타 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이전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이전지역 대학에서 수강하다가 타 지역 대학으로 수강지역 변경 : 비해당
- <대학 중퇴 후 다른 대학에 재학 중인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타 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타 지역 대학 중퇴 후 다시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재학중 : 비해당
 - ※ 다만, 이전지역 대학에 편·입학하여 졸업한 후에는 이전지역 인재에 해당
-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중퇴한 경우>
 - 이전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해당
 - 타 지역 소재 고등학교 졸업 후 경찰대학·사관학교 중퇴자 : 비해당
- <대학 졸업 후 대학원을 재학 또는 졸업한 경우>
 - 이전지역 대학 졸업 후 타지역 소재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해당
 - 타 지역 소재 대학 졸업 후 이전지역 대학원 재학 또는 졸업 : 비해당

□ 비수도권 지역인재 상세내역

1.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범위

- 비수도권지역인재 : 대학(전문대학 포함)까지의 최종학력(대학원 이상 제외)을 기준으로 서울·경기·인천지역을 제외한 비수도권 지방학교를 졸업(예정)·중퇴한 자 또는 재학·휴학중인 자(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통합공시 기준을 따름)

2. 비수도권 지방대학의 범위(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가. 지방대학에 포함되는 대학

- (1)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로서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사이버대학은 제외), 기술대학, 각종학교'
- (2)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로서 서울·경기·인천을 제외한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 (예시) 고려대 세종캠퍼스, 동국대 경주캠퍼스, 연세대 원주캠퍼스 등

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세대학교 원주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 : 지방대학에 해당하지 않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균관대학교 수원캠퍼스는 고등교육법 제24조 상의 분교가 아님

- (3)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의 지역대학 중 서울·경기·인천 이외의 지역에 소재한 지역대학
- (4) 「한국과학기술원법」 제14조 제3항에 의해 설치된 과학기술대학

나. 지방대학에 포함되지 않는 대학(예시)

- (1) 본교가 서울·경기·인천에 소재하는 대학 및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서울·경기·인천 지역대학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 (3) 사이버대학, 디지털 대학 등 「평생교육법」상의 평생교육시설
- (4) 외국대학 및 외국대학의 국내분교

3. 그 외의 비수도권 지방인재에 해당하는 경우(공공기관 통합공시 매뉴얼)

- (1) 최종학력이 고졸이한 경우에는 최종학교 소재지가 비수도권인 경우
- (2) 경찰대학 및 각종 사관학교 중퇴자로서 경찰대학·사관학교를 제외한 최종 출신 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 (3) 대학원 및 사이버·디지털 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 또는 독학사, 학점인정에 의한 학위 취득자, 검정고시 합격자로서 당해 학력을 제외한 최종 출신학교가 비수도권 지역인 경우